

시 보

차 례

- ◎ 조 례
 - 제 1771 호 : 서울특별시급수조배증개정조배 3
- ◎ 규 칙
 - 제 2026 호 :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증개정규칙 6
- ◎ 고 시
 - 제 275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 6
 - 제 276 호 : 건설업 (설비전문공사업) 면허고시 7
 - 제 277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7

< 이 면 계 속 >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278 호 : 소공 4 구역 제 6 지구제 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	8
제 279 호 : 주택개발제한구역 지적변경승인고시.....	13

◎ 공 고

제 269 호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회계관계공무원직인신조 등록공고	14
제 271 호 : 도시계획사업(공원)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16
제 272 호 : 무기과열지구지정	16
제 277 호 :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준공	17
제 278 호 : 연차별집행계획수립공고	17
제 279 호 : 무기과열지구지정	19
제 280 호 :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.....	19
제 286 호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징수관공인등록공고.....	20

◎ 구 청 공 고

제 19 호 : 관인개각공고	20
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3. 5. 25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771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중 제 2 항을 신설하고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제 5 항을 제 6 항으로하고, 제 4 항 및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 2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수요처가 급수종별간 분리제량을 목적으로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로 한다.

④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, 정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1 항 단서,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및 시설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.

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양수기와 대지 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소유로 한다.

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9 조 (공사비의 산출방법) (1)정액공사비는 계획급수지역내에 간 이관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; 노무비, 도로복구비, 양수기대금,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(과제경리, 준공검사, 설계수수료등 포함)등의 제액으로 한다.

② 제 8 조 제 1 항 단서, 제 2 및 3 항의 공사비는 재료비, 노무비, 도로복구비, 양수기대금, 일반행정관리비 등 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1 조 (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 고시)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등지역은 시장이 고시한다.

제 16 조 제 1 항 중 "양수기의 설치 위치"를 "양수기의 설치위치 및 구조경운"으로 한다.

제 17 조 제 2 항 중 "100분의 6을"을 "제량법령상의 사용수량 범위를"으로 한다.

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9 조 (공사비, 수도요금 및 파이프의 감면) ①시장은 무허가 건물 및 성화 지역내의 기존 연건평 10 평 미만의 주택으로서 20 여대 이하의 단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의 30% 범위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파태료의 징수에 있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제 30 조 제 3 항중 제 6 호를 제 7 호로 하고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 41 조중 제 2 호내지 제 7 호를 제 3 호내지 제 8 호로하고, 제 8 호내지 제 11 호를 제 10 호내지 제 13 호로하고

제 2 호 및 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. 제 8 조 제 6 항의 공사비 분할납부
9. 제 29 조 공사비, 수도요금 및 파태료의 감면

별표 제 2 가. 급수사용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제 2 나. 급수종별구분표 1. 제 1 종란중 7 호란을 “발전소”로 하고 제 27 호 적요란 “4 층이상 건물” 다음에 “(의료기관제외)”를 삽입하고 “제 38 호 발전소”는 삭제한다.

별표 제 2 나. 급수종별구분표 3. 제 3 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 3 종
시민주거용급수. 다만, 1 주택(단독주택, 공동주택의 분양단위)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제 3 종 요율을 적용하고, 2 호 이상의 공동주택

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(분양단위)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 3 종 요율을 적용한다.

이 경우 사용자수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, 사용자수를 사용자 또는 호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이 1㎥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점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다만,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- 1) 1983년 7월 조정분
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
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율
- 2) 1983년 8월 조정분
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
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

3.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, 고시, 기타의 처분과 신청신고 기타의 절차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(별표 제 2)

가. 급수사용료 요율표

구 분 업 종	1개월 기본요금		초과 사용료	
	기본수량(㎡)	기본요금(원)	사용구분(㎡)	당단가(원)
제 1 종	30	3,270	31-200	410
			201-300	550
			301 이상	700
제 2 종	20	2,100	21 이상	260
제 3 종	15	600	16-30	79
			31-50	174
			51 이상	230
제 4 종	500	260,000	501 이상	880
제 5 종	500	54,000	501 이상	140
제 6 종	사용수량 1㎡당 170 원			
제 7 종	100	5,000	101 이상	50
제 8 종	사용수량 1㎡당 410 원			

* 사설소화전 기본요금 월 1,100 원(1년분을 1회에 징수할 수 있다)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종 요율에 의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
분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
한다.

1983. 5. 24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26 호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
중 개정 규칙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
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의 3 중 " 0.25 mg 이상 " 을
" 0.25mg 초과 "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적용
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5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11 호 (77.7.7)

및 제 451 호 (78.9.4) 로 도시계획시
설 (학교)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
며 석고시 제 447 호 (82.11.3) 로 도
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동덕여자
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
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
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되었기 이를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
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
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5. 24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하월곡 86-1
일대
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명칭 : 동덕여자대학 시설확충

다. 사업시행규모

1) 사업시행지면적 : 43,857 m²

2) 사업변경

(가) 당초

• 건축면적 - 8,251.8 m²

• 연 면 적 - 30,632.0 m²

• 동 수 - 10 동

• 용 도 - 교사 및 부대시설

(나) 변경후

• 건축면적 - 8,692.6 m²

• 연 면 적 - 31,598.3 m²

• 동 수 - 11 동

• 용 도 - 교사 및 부대시설

<p>3) 변경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면적 - 440.8 ㎡ • 연면적 - 965.7 ㎡ • 동 수 - 1동 (지하 1층, 지상 2층 및 옥탑) • 용 도 - 학생생활 지도관 <p>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성북구 하월곡동 23-1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사장조용각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1) 착수년월일 - • 기허가사항 : 변경 없음 • 금회허가분 :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</p> <p>2) 준공예정년월일 - • 기허가사항 : 변경 없음 • 금회허가분 : 1983.12.31</p>	<p>바. 위치도및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</p> <p>사. 사용할토지 : 별첨도면과 같음 (도면생략)</p> <p>아.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(수용할 토지없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6 호</p> <p>건설업 (설비전문공사업) 면허고시</p> <p>건설업법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(설비전문공사업) 면허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 5.25 서울특별시장 김 성 내</p>
--	---

다 음

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도급한도액
83-12-514	영화기계 (합)	박진영	아포구하수동 144-18	20,000,000 원
83-12-515	개명산업 (주)	권중일	영등포문래동 3가 54-37	20,000,000 원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7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준공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 (82.5.14) 및 동고시제 344 호 (82.8.23)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동법 시행</p>	<p>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제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청과와 학교법인 명덕학원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 5. 25 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가. 사업시행지 : 강서구내발산동 169
원대 (44,305 ㎡)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
(학교) 영일여자중고등학교

· 사업의규모 : 총건물 8 동 지상 5
층 건물 4 동 지상 1 층 건물 4
동 건축연면적 18,315.99 ㎡

라.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: 강서구화
곡동 320

학교법인 명덕학원(재) 윤명기

마. 사업시행기간 : 1983.5.26 ~
1984.5.25

바. 허가도서 : 별첨도면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8 호

소공제 4 구역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
인 가 고 시

건설부고시 제 285 호 (78.9.26) 로
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147 호
(80.5.19) 로 사업계획결정되고, 서
울특별시고시제 191 호 (83.4.2) 로 사
업계획 변경 결정된 소공 4 구역 제
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
재개발법 제 8 조 및 제 12 조규정에
의거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및 동법
시행령 제 21 조규정에 따라 아래와
같이 고시한다.

1983. 5. 26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소공 4 구역
제 6 지구 재개발 사업

나. 시행구역 및 면적

- 시행구역 : 중구소공동 50.50-27
50-5.77-5, 50-10.50-26
50-29.50-15.59.60-2
50-11, 76.77-9.77-4,
79.51, 44-4.45-2.50-
25.87-15 (제 20 필
지)

○ 시행면적 : 3,529.3 ㎡
(1,067.6 평)

· 대지면적 : 2,874.8 ㎡
(869.6 평)

· 공공시설면적 : 654.5 ㎡
(198.0 평)

다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중구소
공동 50-5

라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
3 년

마. 시행인가년월일 : 1983.5.26

바. 시행자의 주소및성명 : 서울특별시
중구소공동
50-5

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 수 영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축

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

권리 명세 : 별첨

2143

3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					
3-가. 토지								
번호	소재지지번	지목	지적 (㎡)	시합면적 (㎡)	소유자	권리명세		
						주소성명	종류	권리(원)
1	소공동 50-27	대	6.6	6.6	동양화학공업(주)			
2	" 50	"	908.4	908.4	(주) 유니온	중구남대문로1가14 소동은행	근저당	8,120,000,000
3	" 50-5	"	649.3	649.3	"	"		
4	" 50-5	"	9.5	9.5	법한해상화재보험(주)			
5	" 77-5	"	228.8	204.8	"			
6	" 50-10	"	548.8	548.8	김 옥			
7	" 50-26	"	13.9	13.9	"	중구대평로1가61의1 한국주택은행	근저당	35,000,000
8	" 50-29	"	14.2	14.2	이 상 호			
9	" 50-15	"	180.8	180.8	매일경제신문사	중구남대문로2가10의1 서울신당은행	근저당	150,000,000
10	" 59	"	244.6	114.1	이 수 이			
11	" 60-2	"	211.5	165.5	"			
12	" 50-11	"	132.2	132.2	국립중앙도서관			

제 967 호

시

보

1983.5.21 24-9

번호	소재지지번	지목	지적 (㎡)	시행면적 (㎡)	소유자	권리명세		
						주소성명	종류	권리(원)
13	소공동 76	대	1,244.0	126.1	(주)한일은행			
14	" 77-9	"	39.15	39.15	"			
15	" 77-9	"	39.15	39.15	재단법인경생의원			
16	" 77-4	"	54.9	31.5	"			
17	" 79	"	409.9	8.1	"			
18	" 51	"	2,681.6	255.9	(주)정석기업	인천시중구사동 2의5 경기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140 의 1 한국산업은행	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근저당	2,500,000,000 화란화재 1,143,000 길다. 미화 \$ 8,405,000 30,900,000,000
19	" 44-4	"	4.0	4.0	국유지			
20	" 45-2	"	2.3	2.3	국세청 (국세청)			
21	" 50-25	"	48.3	48.3	" (")			
22	" 87-15	"	4,094.9	26.7	시유지			
계			11,716.8	3,529.3				

24-10 제 967호 시

보 1983.5.21

3 - 나. 건축물									
번 리	소재지지번	용도	구조	면적(㎡)		소유자	권리명세		
				공부	사정		주소성명	종류	권리(원)
1	소공동 50	사무실	철근콘크리트 스타브	465.59	465.59	(주) 유니온	중구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	근저당	8,120,000,000 (토지와공담)
	" 50-5	"	(2-4층)	1,369.59	1,369.59				
	" 50-27	"	(지하실)						
2	" 50-5	음식점 및 상고	시멘트벽돌조도단층 (1-2층)	134.48	134.48	"	"	"	"
		사무실	철근콘크리트빙옥개 (1-2층)	250.44	250.44				
3	" 50-5	"	" 옥옥초(1-7층)	2,288.13	2,288.13	"	"	"	"
			" (옥상)	207.67	207.67				
			" (지하실)	78.51	78.51				
			" 연화초(옥상)	71.96	71.96				
4	" 50-10	사무실	연화초도단층(1-2층)	573.96	573.96	김 옥 재 주 삼하회	"	"	"
5	" 50-11	"	철근콘크리트 스타브(1층)	119.01	119.01				
"	"	(2-12층) 옥상(1-3층)	1,333.09 132.2	1,333.09 132.2					

번 호	소재지번호	용도	구조	면적 (㎡)		소유자	권리명세		
				공부	사정		주소성명	종류	권리(원)
6	소공동50-15 " 50-15	사무실	철근콘크리트스라브 (지하실)	91.6	91.6	대일경제 신문사	중구남대문로2 가10의1 서울신탁은행	근저당	150,000,000 (토지와공답)
			" (1-5층)	586.1	586.1				
			" (옥탑)	66.8	66.8				
7	" 50-18		철근콘크리트도단층 (지하실)	38.7	-				
8	" 77-5	사무실	철근콘크리트도단층 스라브 (1-12층)	2,680.07	2,680.07	법한해 상화재 보험			
9	" 78-1	사무실	" (13층)	150.91	150.91	재단법인 경향약원			
			" (지하실)	223.34	223.34				
			철근콘크리트스라브 (1층)	82.64	82.64				
			" (2-4층)	244.63	244.63				
			" (지하실)	79.34	79.34	중일부			
			연와조와층	21.49	21.49				
계				11,631.96	11,549.2				

24-12 제 967 호 시 보 1983.5.21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9 호

주택개발제한구역지적변경승인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155 호 (82.4.26)
와 건설부고시 제 346 호 (82.9.24)
로 주택개발 제한구역 변경 지
정된 창신 1 구역의 9 개구역에 대
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

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 규정예
의하여 이를 지적 변경승인 고시
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
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주택관
리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
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3. 5.26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변경승인고시내역

단위 : ㎡

구역명	위 치	면 적			비 고
		변경전	변경후	증 감	
창 신 1	종로구창신동 9 번지일대	66,700	61,246	감 5,454	일 부 변 경
현 저 3	〃 현저동 746 〃	141,900	105,704	〃 36,196	〃
전 농 2	동대문구전농동 127 〃	15,500	5,670	〃 9,830	〃
전 농 3	〃 〃 산 6 〃	127,137	83,192	〃 43,945	〃
담심리 6	〃 담심리동 12 일대	79,792	67,831	〃 11,961	〃
삼 선	성북구삼선동 485 일대	91,070	28,496	〃 62,574	〃
신 길 3	영등포구신길동산 137 일대	123,780	26,528	〃 97,252	〃
신 공 덕	마포구신공덕동 1 번지일대	134,652	58,387	〃 76,265	〃
본 동 1	동작구본동 126 번지일대	192,970	61,494	〃131,376	〃
가 락 2	강동구가락동산 60-3 일대	9,917	13,202	증 3,285	구역내면적정정

나. 도면 및 조서 : 별첨 (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69 호

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
회계관계공무원직인신조등록공고

1983년 5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
치 조례 (조례 제 1765 호) 공포, 시
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용

- 1. 직인명 : 별첨
- 2. 사용개시일 : 83.5.19
- 3. 직인의인영 : 별첨

직 인 등 록 조 서

인 영

회 계 명 : 일반회계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
 직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분임경리관
 사용개시일 : 1983. 5.1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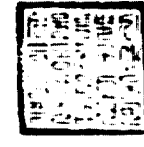


직 인 등 록 조 서

인 영

회 계 명 : 일반회계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목동개발사업소
 직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물품관리관
 사용개시일 : 1983. 5.19

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인 등 록 조 서</p> <p>회 계 명 : 일반회계</p> <p>관 서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</p> <p>직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분임지출원</p> <p>사용개시일 : 1983. 5.19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인 등 록 조 서</p> <p>회 계 명 : 일반회계</p> <p>관 서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</p> <p>직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</p> <p>사용개시일 : 1983. 5.19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인 등 록 조 서</p> <p>회 계 명 : 일반회계</p> <p>관 서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</p> <p>직 명 :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문품출납원</p> <p>사용개시일 : 1983. 5.19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영</p> 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1 호

도시계획사업(공원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76 호(82.4.29) 도시계획(공원)시설 결정 및 동고시 제 256 호(83.5.10)로 지적고시된 종로구 종로2가 38-1번지 파고다공원 정리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공원)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 공고함.
 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- 가. 공람장소: 종로구청 공원녹지과
나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1983. 5.23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 38-1 외 20 필지
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공원) 파고다공원 정비공사
3. 사업의규모: 면적 19,639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장(종로구청장)
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 - 84.12.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소재지;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2 호

투 기 과 열 지 구 지 정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 제 2 항에 의하여 공고한다.

1983. 5.24

서울특별시장

다

음

지정구역 강남구압구정동 9-1 외 5 필지
면적 10,652.07 m²
아파트명 압구정동, 한양아파트
규모 아파트 15 층 1 동 90 세대
사업주체 (주)한양 대표 배종렬

강남구가락동 76-1 외 174 필지
14,302.529 m²
가락동, 한양아파트
아파트 12 층 6 동 251 세대
좌 동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7 호
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시행허가 준공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(82.4.13) 호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 및 동고시제 133 호 (83.3.9) 로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설계 변경허가된 사항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5.26

서울특별시장

가. 준공사항

- (1) 사업시행지 : 강서구방화동 526-16, 17
- (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김포교통주식회사

(3)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강서구 가양동 54-8 김포교통(주)
(대표) 유 기 만

(4) 사업기간 : 착공일 : 82. 4. 24
준공일 : 83. 5. 26

(5) 준공토지 및 건물면적 : 대지 3,034 ㎡
건물 → 지하 1 층, 지상 1 층 옥탑
총 630.4 ㎡

(6) 준공토지조서 : 별첨과 같은 (생략)
(7) 준공도면 : 별첨도면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8 호

연차별 집행계획수립

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된 일부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된 도시계획법 제 14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5. 27

서울특별시장

사업의 종류 및 명칭	사업시행지	사업시행규모 (면적(㎡))	사업시행기간
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	도봉구상계 2 동 608 일대	66.120	83.5-84. 6
" "	동대문구면옥동 138-23	2.561	84. 9 이 후
" (수 도)	영등포구양화동산 2	181.966	83.1-86.12
" "	동작구본동 158	110.491	83.1-86.12

사업의 종류 및 명칭	사업시행지	사업시행규모 면적 (㎡)	사업시행기간
도시계획사업 (수 도)	강동암사동산 10 일대	221,481	83. 1-87.12
" (")	강남구방배동산 84-12	400	84. 1-84.12
" (")	" 서초동산 161 일대	10,000	83. 1-84.12
" (")	" 양재동산 30	14,600	83. 1-83.12
" (철 도)	성북역 - 도봉동시계	7.5 km	82. - 85
" (공 항)	강서구공항동일대	2,930,000	83-87, 87이후
" (운동장)	성북구종암동산 2-27 일대	1,297,300	86. 1-86.12
" (시 장)	동대문구장안동 153	111,600	84. 5-86. 5
" (")	강동구천호동 320	3,297.1	85 년 이 후
" (")	" 둔촌동 444	3,332.5	84 년 이 후
" (")	" 방이동 52-1	4,070.4	85 년 이 후
" (")	" 삼전동 62-2	3,306.2	"
" (")	" 석촌동 265-2	4,981.9	"
" (")	" 송파동 113-2	2,556.6	86 년 이 후
" (")	" 신천동 20-40	2,294.5	"
" (")	" 잠실동 40 번지	2,883	83. 5 이 후
" (")	중구신당동 217-91 번지	23,972.8	"
" (")	성북구하월곡동 77-50	2,138	"
" (")	영등포구신길동 235-2	2,802	83. 6.30 이후
" (")	" 영등포동 5 가 18	1,578.7	83.12.31 이후
" (")	" " 20	1,060	84.12.31 이후
" (")	" " 16	1,832	85.12.31 이후
" (")	서대문구영천동 69-120 일대	2,606	"
" (")	" 홍제동 306-2 일대	3,240	88 년 이 후
" (")	" 연희동 181	4,552	84. 5-85. 1
" (")	성동구옥수동 244-12 일대	1,917.4	88 년 이 후
" (")	" 행당동 322-54 일대	1,052	86 년 이 후
" (")	"	1,210	"

사업의 종류 및 명칭	사업시행지	사업시행규모 면적 (㎡)	사업시행기간
도시계획사업(시장)	성동구성수동 2가 335-47	4,261	86년 이후
" (")	" 중곡동 303-1 일대	1,914	"
" (")	" " 518-181 부근	1,350	"
" (")	" 행당동 191-9 부근	3,263	"
" (운동장)	" 광장동 188-2	3,595	"
" (")	" 마장동 405	14,446	"
" (공용의청사)	" 성수동 1가 483-1	1,026	"
" (")	" 구의동 253-23	1,444	84.4 이후
" (")	" 중곡동 171	426	84.9 이후
" (")	" 군자동 35의 8 일대	407	"

o 별첨도면표시와 간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9 호

투기과열지구지정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3. 5. 27

서울특별시

다 음

1. 지정구역 :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동 241-21 외 14 필지
2. 면 적 : 44,496.101 ㎡
3. 아파트명 :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
4. 규 모 : 아파트 13층 6개동 546 세대

5. 사업주체 : 신동아건설(주)

대표이사 유 상 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80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

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

1. 영등포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고쳐 서울특별시공고제 511 호 ('82. 12. 22) 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도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지를 일부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
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5.27
서울특별시장

(환지예정지변경내역)

가. 사업명 :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
리사업

나. 변경위치 : 강남구도곡동 227—
19호일대

다. 변경면적 : 별첨조서참조
(별첨조서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86 호

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
징수관 공인등록공고

서울특별시징수관공인을 아래와 같
이 신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 관계공
무원 직인규칙 제 7조에 의거 등록
하고 관인규정 제 9조 및 서울특별
시 관인규칙 제 6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3. 5.27
서울특별시장

1. 공인명

가.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징
수관 인

나.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수
입금출납원인

2. 사용개시일 : 1983. 5.27

3. 공인의인명

인
영



공인명

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
징수관 인

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
수입금출납원 인

◎은평구공고제 19 호

관인개각공고

서울특별시관인규칙 제 3조의 규정
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용 등
장직인을 개각 사용승인하였기 동규
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
고함.

1983. 5.24
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

다 음

1. 대조동장인 (일반사무용)
2. 관인의인명

관인명 대조동장인(일반사무용) 계 인

인
영



3. 관인사용개시일시 : 1983.6.1 09:00

사 령

© 1983 년 5 월 23 일 자 명 제 179 호

박 회 열

도봉구 6 호봉
지방농림지원보

김 영 조

동내문구 1 호봉
지방농림지원보시보

김 성 우

강동구 3 호봉
지방농림지원보시보

김 국 원

관악구 15 호봉
지방농림지원보시보

황 인 구

은평구 3 호봉
지방농림지원보시보

이 제 락

동작구 3 호봉
지방농림지원보시보

김 만 제

동봉구 1 호봉
지방토목지원보시보

권 순 덕

상동구 3 호봉
지방행정서기보시보

연 제 181 호

임 남 중

강남구 3 호봉
지방건축지원보시보

제 182 호

기 획 담 당 관
지방별정직 6급상당

김 영 희

원에 의하여 그직을 편람.

종합종말처리사업소
지방별정직 8급상당

구 영 중

원에 의하여 그직을 편람.

종합종말처리사업소 지방별정직 8 급상당 이 병 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	령제 183 호 내 무 국 장 정 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.
---	--

◎ 1983 년 6 월 1 일 자

령제 185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
	부 서	직 급		
이 승 신	중 구	지방행정주사	중구세무 2 과	지방행정주사보
오 종 덕	"	"	"	"
김 수 택	용 산 구	"	용산구청파 2 동	"
연 학 분	성 북 구	"	성북구삼선 1 동	"
남 태 현	마 포 구	"	마포구청무과	"
송 회 문	구 로 구	"	구로구독산 3 동	"
안 세 혁	서대문구	"	서대문구북가좌동	"
한 원 식	종 로 구	지방행정주사보	종로구도시정비과	지방행정서기
장 딜 홍	중 구	"	중구세당 2 동	"
이 은 엽	용 산 구	"	용산구원효로 2 동	"
정 영 순	성 동 구	"	성동구화양동	"
김 봉 엽	성 북 구	"	성북구수도관리과	"
김 규 회	서대문구	"	서대문구시민봉사실	"
최 명 연	동 작 구	"	동작구상도 1 동	"
차 회 열	강 남 구	"	강남구청담동	"
장 동 현	도 봉 구	지방토목기사	도봉구수도공사과	지방토목기사보

◎ 1983 년 5 월 25 일 자

령제 186 호

지하철운영사업소

민 병 훈

지하철운영사업소
 지방기계기사

최 완 중

지방전기기사

공무원 교육원

공무원 교육원

<p>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</p> <p>공무원 교육원</p>	<p>전 윤 섭</p>	<p>령제 189 호</p> <p>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보</p> <p>이 준 성</p>
<p>민방위과 지방토목기사보</p> <p>올림픽시설담당관</p>	<p>임 학 기</p>	<p>복직을 명함. 4호봉을 급함.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 <p>© 1983년 5월 26일자 령제 190 호</p>
<p>종합건설본부 지방기계기사</p> <p>하 수 과</p>	<p>김 용 기</p>	<p>통제전산담당관 현 경 자 지방별정직 8급상당</p> <p>원에 의하여 그직을 편함.</p>
<p>치수과 지방토목기사</p> <p>목동지구재개발사업소</p>	<p>김 선 중</p>	<p>© 1983년 6월 1일자 령제 191 호</p> <p>충북단양군보건소 이 상 제 지방보건기사</p>
<p>© 1983년 5월 25일자 령제 187 호</p> <p>재개발과 지방건축기사</p> <p>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마천근무연장(83.5.26-83.11.30)</p>	<p>조 성 제</p>	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보건기사보에 임함.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</p> <p>© 1983년 5월 27일자 령제 192 호</p>
<p>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통신기원</p> <p>부직을 명함. 6호봉을 급함. 민방위과근무를 명함.</p>	<p>박 용 수</p>	<p>동대문구 홍 순 돈 지방농림기좌</p> <p>도 봉 구</p>

도 봉 구 김 홍 원 지방농림기좌		어린이대공원 최 중 문 지방농림기좌	
어린이대공원 기술담당관		등 대 문 구	
형제 193 호		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 찬 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, 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	중구세무 2 과	지방행정서기보
김 증 구	"	중구주백과	지방행정서기
김 태 돌	"	"	지방행정주사
강 명 구	"	도봉구수유 1 동	지방행정서기
김 정 현	"	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	지방행정주사
이 건 주	경고 (서울특별시 제 1 인사 위원회의결, 통보사항)	영등포구신실 7 동	지방행정서기보
서 울 특 별 시 장			